

2021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4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1. 5. 14.(금)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신탣근(위원장), 김정희, 서도식, 송미경, 안귀숙,
이은주, 정용주, 진명(정혜린), 한장원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형문화재위원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두석장’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비공개)
---	---------------------------	-------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	------------------------------	-------

2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	----------------------------	-------

3	국가무형문화재 ‘백동연죽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비공개)
---	------------------------------	-------

4	‘한지장’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협의	(공개)
---	--------------------------	------

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비공개)
---	-------------------------------------	-------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비공개)
---	---------------------------------------	-------

【보고사항】

1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공개)
---	------------------------------	------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두석장’ 전승교육사 인정 심의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3. 국가무형문화재 ‘백동연죽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4. ‘한지장’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 협의

가. 제안사항

‘한지장’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 협의 요청(2021.03.12.)에 따라 해당 종목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가 ‘한지장’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지정 명칭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부의하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종목명칭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 * 경상남도 제출 의견 : [1안] 한지장 / [2안] 한지장(의령), 한지장(함양) / [3안] 한지장(경남)
- 인정대상 보유자 및 인정사유
 - 신현세(남, '47년생) : 전통한지 제조와 관련된 전체영역에서 재현과정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수능력을 겸비하고 있음
 - 이상옥(남, '47년생) : 한지 제작 기술 뿐 아니라 재배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승가치가 높음. 수년전부터 한지기술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등 한지제작 기술의 전통방식을 전승하고 있음

(2) ‘한지장’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지정명칭	지정일	보유자(생년, 성별, 인정일, 기·예능)	비고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05.09.23	홍춘수 ('42,남/'10.02.11-한지제조)	
경기무형문화재 지장	'96.12.24	장성우 ('67,남/'19.06.10-지장)	
강원무형문화재 원주한지장	'19.09.20	장응렬 ('56,남/'19.09.20-전통한지 제작)	
충북무형문화재 한지장	'07.04.06	안치용 ('59,남/'07.04.06-한지제작)	
전북무형문화재 지장	'06.10.27	김일수 ('49,남/'17.01.06-한지제조)	
경북무형문화재 청송한지장	'95.06.30	이자성 ('50,남/'04.02.27-한지장)	
경북무형문화재 문경한지장	'05.07.28	김삼식 ('46,남/'05.07.28-한지장)	

라. 검토의견

- 명칭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한지장’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사항 : ‘한지장’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바. 의결사항

- 가결함
 - 지정 명칭은 ‘한지장’으로 함

붙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협의 요청문 1부.

[붙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사전협의 요청문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 상 남 도



수신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사전협의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도 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의하여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한지장」 종목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국가무형문화재<제117호 한지장>와 같은 명칭으로 보유자인정이 가능한지 사전협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하는 내용

종목(신청인)	1안	2안	3안	행정예고
한지장(신현세)	한지장	한지장(의령)	한지장(경남)	'21.2.10-3.12
한지장(이상옥)	한지장	한지장(함양)	한지장(경남)	(의견없음)

나. 경남도 의견 : 가능하면 1안이 좋으나 불가한 경우 2안 또는 3안

붙임 : 공고문 1부. 끝.



문화재관리담당

박주영

가야문화유산 전결2021.3.12

과장 김영선

협조자 주무관

김영해

시행 가야문화유산과-3923 (2021. 3. 12.)

접수 무형문화재과-916 (2021. 3. 15.)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암대로 300,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4572

팩스번호 055-211-4559

/ jooyoung315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고사항

1.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안)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등 9종목의 영문명칭(안)을 정비하였기 이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관련 규칙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개별 영문 명칭(안)을 정비하였기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임.

다. 보고내용

- 근거 :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예규 제213호)
- 주요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영문 명칭(안) 9건(붙임 참조)
 - 신규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 : 6건
 - * 김천금릉빛내농악, 남원농악, 삼베짜기, 사경장, 활쏘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 기존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 변경 : 3건
 - * 온돌문화, 전통어로방식-어살, 불복장작법
- 향후계획 :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 게시('21.05월)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함
 - 사경장 : manuscript sutra copying을 추천함
 - 삼베짜기 : hemp fabric weaving을 추천함
 - 상기 의견에 대해 추가감수를 받도록 함

-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안) 1부
2.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1부.

국가무형문화재 영문명칭(안)

연번	국문 명칭	영문 명칭	
		기존	변경(안)
1	김천금릉빛내농악	-	Gimcheon Geumneung Binnae Nongak (Farmers' Performance of Binnae Village, Gimcheon)
2	남원농악	-	Namwon Nongak (Farmer's Performance of Namwon)
3	삼베짜기	-	Sambae Jjagi (Hemp Weaving)
4	사경장	-	Sagyeongjang (Sutra Copying)
5	활쏘기	-	Hwalssogi (Archery)
6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	-	Insam Jaebae and Yakyong Munhwa (Cultivation of Ginseng and Its Medicinal Application)
7	온돌문화	Ondol Munhwa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Ondol (Underfloor Heating)
8	전통어로방식-어살	Traditional Fishing - Fishing Weir	Eosal (Fishing Weir)
9	불복장작법	Bulbokjang Jakbeop (Ritual Process of Placing Objects Inside Buddhist Statues)	Bulbokjang Jakbeop (Ritual of Placing Objects Inside Buddhist Statues)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 2013. 7. 26.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일부개정 2014. 10. 17. 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일부개정 2017. 9. 8. 문화재청 예규 제183호
전부개정 2019. 11. 15. 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문화재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재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명칭"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문화재의 이름을 말함.
2. "로마자 표기"라 함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3. "의미역(意味譯)"이라 함은 국문 단어의 뜻을 영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4. "명명 요소(命名要素)"라 함은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을 말함.
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화재 명칭을 말함.
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문화재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 요소가 조합된 문화재 명칭을 말함.
7. "지명(地名)"이라 함은 유적지, 출토지 및 「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8. "인명(人名)"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호(號)·시호(諡號) 등을 말함.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2장 표기 원칙

제4조(기본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문화재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재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5조(일반 원칙)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표기 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
2. 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침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
4. 기관·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5. 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
6. 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
7. 띄어쓰기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제3장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제1절 공통 사항

(생략)

제2절 유형별 표기 기준

(생략)

제25조(무형 문화재) 전래 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 하되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보기]

-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 옥장 玉匠 Okjang (Jade Craft)
- 봉산탈춤 鳳山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Drama of Bongsan)
-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 나주의 셋골나이 羅州의 셋골나이 Naju Saetgollai (Cotton Weaving of Naju)
-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西海岸 배연신굿 및 大同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후략)